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개정 이유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사항을 재정비 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신청 제출서류 정비 (안 제4조제1항제2호)
- 방역에 협조적인 종교시설 지원 제출 서류 신설 (안 제4조제1항제9호)
-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신청 서식 개정 (안 별지 제2호서식)
- 종교시설 지원금 지급 신청 서식 추가 (안 별지 제10호서식)
- 규칙 유효기간 연장 (안 종전 부칙 제2조)
  -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 □ 개정규칙안: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1년 11월 19일 ~ 12월 9일

###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규칙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예정)

파주시 규칙 제        호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 매출액) 조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연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다.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례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교시설 대표자

가. 운영자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종교시설 지원금 신청서 1부

다. 고유번호증 혹은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파주시 규칙 제685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b>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성별)	(남 / 여)
	업 종	사업개시일	
	사 업 장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상시근로자수	명	연 매출액
신청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p>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성명 : (서명 또는 인)</b></p> <p>※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파주시장 귀하</b></p>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분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li> <li>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li> <li>3.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li> <li>4.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li> <li>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li> </ol>
-------------	-----------------------------------------------------------------------------------------------------------------------------------------------------------------------------------------------------------------------

<b>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종교시설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b>			
시설현황	종 교 시 설 명	운 영 자	
	고 유 번 호	생 년 월 일(성별)	(남 / 여)
	설 립 년 월 일	사업개시일	
	시 설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신 도 수	명	
신청인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금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p>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종교시설 운영자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성명 : (서명 또는 인)</b></p> <p>※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파주시장 귀하</b></p>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분증(사본) 1부</li> <li>2. 고유번호증 혹은 종단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1부</li> <li>3.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li> <li>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li> </ol>
-------------	-------------------------------------------------------------------------------------------------------------------------------------------------------------------------------------

신·구조문대비표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 940-4523
입안자	일자리경제과장	신 승 화
	지역경제팀장	박 옥 주
	담당자	김 종 현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 략)</p> <p>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p> <p>가. ~ 마. (생 략)</p> <p>바. <u>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u></p> <p>사. <u>국가 또는 시의 행정지도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u></p> <p>3. ~ 8. (생 략)</p> <p>&lt;신 설&gt;</p>	<p>제2조의2(연 매출액) 조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연 매출액”은 <u>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다.</u></p> <p>제4조(지원신청)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3. ~ 8. (현행과 같음)</p> <p>9. <u>조례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교시설 대표자</u></p> <p>가. <u>운영자 신분증 1부</u></p> <p>나. <u>별지 제10호서식의 종교시설 지원금 신청서 1부</u></p>

<p>② (생 략)          파주시 규칙 제685호 파주시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u>2021년</u>  <u>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다. <u>고유번호증 혹은 종단의 확</u>  <u>인서 등 객관적으로 종교시설</u>  <u>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1부</u></p> <p>② (현행과 같음)          파주시 규칙 제685호 파주시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2조(유효기간) -----<u>2022년 1</u>  <u>2월 31일</u>-----.</p>
-------------------------------------------------------------------------------------------------------------------------------------------------------------------------------------------	--------------------------------------------------------------------------------------------------------------------------------------------------------------------------------------------------------------------------------------------------------------------------------

□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21. 3. 16.]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79호, 2021. 3. 16.,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일자리경제과), 031-940-454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과 영세한 소  
 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  
 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3.16>

**제3조(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  
 활안정지원”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21.1.29>

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 다만, 이 경우 파주시민을 대상으  
 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0.9.25, 개정 2021.1.29, 단서 신설 2021.3.16>
2.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개정 2020.12.28, 2021.3.16>  
 나. 2019년 기준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람 또는 2020년에 창업한 사람으로 연매출액이 3억원 이  
 하인 사람<개정 2020.12.28>  
 다.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된 사람. 다만, 2020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거나 국가 또는 시의 행정지도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사람은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2021.3.16>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신설 2020.6.12>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신설 2020.6.12>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  
 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전문개정 2021.1.29, 2021.3.16>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라 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  
 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삭제 2021.1.29, 신설 2021.3.16>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  
 나 등록을 한 택시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택시운송종사자<신설 2021.3.16>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송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  
 단에 등록된 자.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및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버스 준공  
 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종사자는 제외한다.<신설 2021.3.16>

-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신설 2021.3.16>
- 10.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는 프리랜서로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신설 2021.3.16>
- 11. 그 밖에 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1.3.16>

**제4조(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1호에 따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3.16>

- 1.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대상자별 10만원
  - 1의2. 제3조제3호, 제4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별 10만원<신설 2020.6.12>
  - 2.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자별 100만원 이내.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사람은 업종별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1.3.16>
  - 3. 제3조제5호부터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대상자별 50만원 <신설 2020.12.28, 개정 2021.1.29, 2021.3.16>
-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대상 기준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③ 생활안정지원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3.16>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3.16>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2.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20.6.12>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4.6. 조례 제1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0.6.12.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조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2.28.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9. 조례 제1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는 제3조제5호나목,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택시운수종사자로 본다.

**부칙** (2021.3.16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택시운수종사자는 제3조제6호,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택시운수종사자로 본다.

**제4조(노선버스 운수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제3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로 본다.

## □ 기타 참고사항 : 현행규칙

###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3. 24.] [경기도파주시규칙 제718호, 2021. 3. 24.,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일자리경제과), 031-940-45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기준)** 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 현재 휴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폐업한 경우
4. 삭제 <2021.3.24>
5. 그 밖에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라 한다)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신설 2021.1.5>

③ 조례 제3조제5호,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1.1.5, 개정 2021.2.10, 2021.3.24>

④ 조례 제3조제6호부터 제9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21.3.24>

**제3조(지급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5>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이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제3자일 경우에 한한다)  
마. 삭제 <2021.3.24>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사업자등록증 등 1부  
라.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 마.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바.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사. 국가 또는 시의 행정지도로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개정 2021.3.24>
3.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개정 2021.2.10,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라. 삭제 <2021.3.24>
4.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라. 삭제 <2021.3.24>
5.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제4호에서 이동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개정 2021.2.10>  
다.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택시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개정 2021.2.10>  
라. 삭제 <2021.3.24>
6.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6호서식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파주시에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삭제 <2021.3.24>
7.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른 파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신설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파주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른 프리랜서<신설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8호서식의 프리랜서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5, 2021.2.10, 2021.3.24>

**부칙** (2020.4.6.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1.1.5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10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4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서

<b>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21A경기.파주082		
정책명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당자명	김중현	전화번호 031-940-45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11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일자리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규칙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li> <li>-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li> </ul>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동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b>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b>일자리경제과장 귀하</b>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서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1-82		
자치법규명	「과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 급 및 성 명	복지7급 정지은
주 관 부 서	일자리경제과	주 관 부 서 담 당 직 급 및 성 명	행정8급 김종현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1. 11. 17.		
통 보 내 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과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담 당	팀장 박옥주	담당자 김종현
3. 관련법령 등	해당없음		
4.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상공인 지원신청 제출서류 정비 (안 제4조제1항제2호)</li> <li>○ 방역에 협조적인 종교시설 지원 제출 서류 신설 (안 제4조제1항제9호)</li> <li>○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신청 서식 개정 (안 별지 제2호서식)</li> <li>○ 종교시설 지원금 지급 신청 서식 추가 (안 별지 제10호서식)</li> <li>○ 규칙 유효기간 연장 (안 종전 부칙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li> </ul> </li> </ul>		
5. 심사의견	<p><b>○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b></p> <p>- 「과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 등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p> <p>-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b>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b></p>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이정애(4171)		